

우편관련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고문

「형사소송법」 제109조 및 「민사소송법」 제294조, 제347조, 제352조에 의거 동부산우체국에서 우편관련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요청기관 및 목적 : 부산지법, 재판업무수행
- 법적근거 : 「형사소송법」 제109조 및 「민사소송법」 제294조, 제 347조, 제352조
- 제공일자 : 2020.01.03.
- 제공내용 : 2019.09.30. ××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발송한 우편물의 송달관련 일체의 자료

2020. 01. 03.

동 부 산 우 체 국 장